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54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조계원 · 박수현 · 이기현
이성윤 · 박해철 · 이개호
윤종균 · 장종태 · 김문수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3항 중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때: 2만원
2.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할 때: 1천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 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 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람은 1만</u> <u>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 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 <u>사람은 다음</u> <u>각 호에서</u> ----- ----- -----.
<u><신 설></u>	<u>1.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u> <u> 때: 2만원</u>
<u><신 설></u>	<u>2.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할</u> <u> 때: 1천원</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